

< 주요 변경 대비표 >

1. 변경대상 펀드명(변경후) 및 변경 문건:

No.	펀드명	구분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간이설명서
1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	○	○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8년 9월 4일(화)

3. 주요 변경사항:

[1] 신탁계약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85% -> 연 0.84%,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 I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모투자신탁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u>종류 I 수익증권</u>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u>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u> 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u>종류 I 수익증권</u> 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 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삭제>
제10조(수익증권 의 발행 및 예탁)	11.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현행과 동일>
제18조(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1.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1.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39조(보수)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5%</u> <u>신탁업자보수율: 연 0.05%</u>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u>	<u>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4%</u> <u>신탁업자보수율: 연 0.04%</u>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15%</u>
제39조(보수)	11.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삭제>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1. <생략> <신설> 2. <이하 생략>	1. <생략>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3. <현행과 동일>
부칙	<신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투자설명서

-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해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85% -> 연 0.84%,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 I 클래스 정의 수정 및 V(변액보험) 클래스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u>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u>	<u>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
제2부. 4. 가. 업무위탁 집합투자업자 및 내용 나. 해외위탁집합 투자업자 개요		<삭제>
제2부. 5. 다.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u>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u> 운용전문인력
제2부. 6. 나. 종류형 구조	<u>종류 I 수익증권</u>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u> <u>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u> <u>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 <u>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u> <u>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u> <u>변액보험</u>	<u>종류 I 수익증권</u>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u> <u>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u> <u>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 기구의 성질을</u> <u>가진 것을 포함)</u> <삭제>
제2부. 6. 다. 모자형 구조	①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u>주식포트폴리오</u> 는 <u>향후</u> <u>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u> <u>중국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되</u> <u>중국의 상하이, 센젠 증시는 물론 홍콩,</u> <u>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전세계</u> <u>주요거래소에 상장 중국관련 주식 및</u> <u>주식관련 증서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u> ②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u>주식포트폴리오</u> 는 투자대상이 되는 <u>중국관련 주식</u> 중에서 장기적인 <u>관점에서 주주 가치를</u> <u>증대시킬 수 있는 종목, 성장성이 뛰어난</u> <u>종목, 우월한 주주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u> <u>종목의 발굴 및 슈로더의 In-house</u> <u>리서치를 기초로한 <u>상향식 기업분석을</u></u> <u>통하여 <u>종목을 선정함으로써 지속적인</u></u> <u>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또한, 시장의</u> <u>비효율성을 활용한 <u>종목 선정</u>을 통해</u> <u>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u>	①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u>중국 기업들의</u> <u>주식 및 <u>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u></u> <u>집합투자기구의 <u>집합투자증권에</u></u> 주로 투자합니다. ② 투자전략 <u>중국 기업들의 <u>주식 및 <u>주식관련증권에</u></u> 주로</u> <u>투자함으로써 <u>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u></u> <u>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u>최소 2/3 이상을</u></u> <u>중국 기업들의 <u>주식 및 <u>주식관련증권에</u></u> 투자하며,</u> <u>중국 B 주식과 <u>중국 H주식에</u>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u> <u>펀드 자산의 <u>30%미만을</u>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u> <u>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u>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외국 주식에</u>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u>법 시행령</u>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이하생략-	이 투자신탁은 <u>중국 기업들의 <u>주식 및</u></u> <u>주식관련증권에 <u>주로 투자하는</u></u> <u>집합투자기구(이하 “<u>피투자집합투자기구</u>” 라</u> <u>한다)의 <u>집합투자증권에</u> 주로 투자하는</u> <u>모투자신탁을 <u>법 시행령</u></u>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 <u>현행과동일</u> -
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신설>	1)집합투자증권 : 40%이하 -> 60%이상 가. <u>중국 기업들의 <u>주식 및 <u>주식관련증권에</u></u></u>

<p>투자대상 투자한도</p>	<p>및</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외국주식 2)채권 3)자산유동화증권 4)어음 5)금리스왑거래 6)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7)파생상품 8)투자증권대여 9)환매조건부채권 매도 10)증권의 차입 11)파생결합증권 12)유동성자산 1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중국 주식 : 60%이상 -> 40%이하 3)채권 <삭제> <삭제> 4)금리스왑거래 5)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6)증권대여 7)파생상품 <삭제> <삭제> 8)파생결합증권 9)유동성자산 10)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한도</p>	<p>및</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11) 내지 1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11) 내지 1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5) 및 8) 내지 9)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현행과 동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채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월간 2.~4. <현행과 동일>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내지 5) 및 8) 내지 9)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제2부. 8. 나.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p>	<p><신설></p>	<p>집합투자증권 등(1) -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p>

		<p>투자하는 경우 다.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 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p>
<p>제2부. 8. 나.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p>	<p><신설></p>	<p>집합투자증권 등(2)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제2부. 8. 나.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계속)</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6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7 호 내지 제 11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 및 제 19 조제 10 호 내지 1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p>

	<p>1.~5. <생략> <u>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u> <u>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u> <u>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u> <u>적용하지 아니한다.</u></p>	<p>됩니다. 1.~5. <헌행과 동일> <u>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u> <u>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6 호 및</u> <u>제 19 조제 10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u> <u>최초설정일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u> <u>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u> <u>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u></p>
<p>제2부. 9. 가.</p>	<p>(1)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p> <p>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 중국의 상하이 및 쉐젠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런던 및 뉴욕 등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관련 주식(중국과 관련하여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 포함) 등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 투자대상 주식(예시)</p> <p>(2)투자방침 ①운용 프로세스: 상세 내용 생략 ②투자비중: 상세 내용 생략</p> <p>③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④참조지수: MSCI China Free Index (USD)</p>	<p>(1)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p> <p>(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3)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 상세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조 ②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투자하며,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 자산의 30%미만을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④참조지수:MSCI China Index Net Total Return (USD) [NDEUCHF] 95% + Call 지수 5%</p>
<p>제2부. 9. 가. (3) 위험관리</p>	<p>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래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② 환헤지 방법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홍콩 달러 및 미국달러 표시)의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한</p>	<p>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 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② 환헤지 방법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p>

	<p><u>환헤지</u>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 달러 및 홍콩 달러 자산에 대하여는 원-달러 헤지를 수행하지만,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헤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화자산 표시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인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p>	<p>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추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달러화 표시 자산 이외의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헤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p>
<p>제2부. 9. 나. 수익구조</p>	<p>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투자자산이 모투자신탁인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통해 투자되며, 모투자신탁은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서에 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Schroder ISF China Opportunities’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p>
<p>제2부. 10. 가. 일반위험</p>	<p><신설></p>	<p>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p>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u>자본시장법제 251 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u>	종류 I 수익증권 <u>50 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u> <삭제>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직접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천만원 수수료 및 보수 비용 예시표	집합투자보수: 연 0.85% 신탁업자보수 : 연 0.05%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종류 V(변액보험) 수익증권	집합투자보수: 연 0.84% 신탁업자보수 : 연 0.04%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15% <삭제>
제2부. 14. 나.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신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이 투자신탁 단계에 한정되며, 투자신탁이 자산으로 편입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3부. 3.가.&나.	주1) 참조지수: MSCI China Free Index (USD)	주1) 참조지수: 2018년9월4일 이후부터 MSCI China Index Net Total Return (USD) [NDEUCHF] 95% + Call 지수 5% [변경전: MSCI China Free Index (USD)]
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위탁회사	[업무의 위탁]	<삭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① <생략> <신설> <이하 생략>	① <생략>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현행과 동일>

[3] 간이투자설명서

- 모펀드 펀드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비율 및 투자제한 변경, 펀드명 변경, 참조지수 변경, 환헤지 방법 변경,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 0.85% -> 연 0.84%, 신탁보수: 연 0.05% -> 연 0.04%, 사무보수: 연 0.02% -> 연 0.015%)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펀드명칭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A(주식)	슈로더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운용보수 : 연 0.85% 신탁보수 : 연 0.05% 일반사무관리보수 : 연 0.02%	운용보수 : 연 0.84% 신탁보수 : 연 0.04% 일반사무관리보수 : 연 0.015%
II. (1)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이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를 투자합니다.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II. (1) 2. 투자전략	<p>(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등에 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 달성을 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p> <p>(2) 세부 운용전략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p> <p><중략> 선강통(Shenzhen-HongKong Stock Connect):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과 홍콩 증권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 목적으로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센젠 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와 CSDC(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은 센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share 를 홍콩 소재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음.</p> <p><신설></p>	<p>(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슈로더 차이나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목적 달성을 하려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p> <p>(2) 세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중국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p>
II. (1) 2. 투자전략 참조지수	참조지수: MSCI China Free Index (USD)	참조지수: MSCI China Index Net Total Return(USD) [NDEUCHE] 95% + Call 지수5%
II. (1) 4. 운용전문인력	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II. 3. 위험관리	<p>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차원의 트레이킹에러, 베타수준, 종목 집중도, 스타일 분포, 시장대비 성과 분석등 다각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 내</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Risk profiling, Portfolio Management, Independent oversight 의 세가지 단계를 거쳐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투자신탁 내</p>

	<p>외화자산(홍콩 달러 및 미국달러 표시)의 평가액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80%±20% 수준에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p>	<p>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인 미달러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p>
--	--	--